금융감독원	**보 도 자 료**	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

보도	2026.11.26.(목) 조간	배포	2026.11.25.(수)

담당부서	연금감독실 연금감독팀	책임자	팀 장	황찬홍	(02-3145-5190)
		담당자	선 임	안석원	(02-3145-5185)

〈 **제5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논의 안건** 〉

환매중단펀드를 보유한 퇴직연금 계좌도 실물이전이 가능해집니다.

- 환매중단펀드를 포함한 계좌의 실물이전 방안을 마련하여, 가입자의 사업자 변경이 더욱 편리해집니다 -

개선 내용 및 기대 효과

◈ **금융감독원**은 **러시아 펀드** 등 **환매중단펀드***를 **보유**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**퇴직연금 계좌 전체**의 **실물이전**(사업자변경)이 **제한**되었던 **가입자****에 대한 **실물이전 방안** 마련('26.8월부터 진행된 실물이전 개선 TF 논의 사항)

* '22년 전쟁 등으로 인해 러시아 펀드(12개)에 대한 환매가 중단

** 전체 적립금 대비 **1.6%**에 **불과**한 **환매중단펀드**로 인해 **5,092명(7,835억원)의 이전**이 제한

❶ **동일한 환매중단펀드**를 판매한 **퇴직연금 사업자간**에는 해당 환매중단펀드를 포함한 **계좌**의 **실물이전 방안**을 마련**('27.1.18. 시행 예정)**

❷ **'26.9월 도입**한 **''퇴직연금형 개인투자용 국채'**도 투자 기간(최소 10년)동안 실물이전이 **불가**하였으나 **개선 조치**(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**'27.3월내 시행 예정**)

❸ **향후**에도 **금융감독원**과 **퇴직연금사업자**가 함께 하는 **'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'**를 통해 **DC→타사 IRP 실물이전** 등 **적용 범위 확대 지속 추진**

»» 동 개선방안으로 **환매중단펀드** 등 **실물이전 제한 상품**을 **보유**한 **가입자의 불편**을 **해소**하고 실물이전 제도의 **실효성**을 **높일 것**으로 기대하며,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**가입자 중심**의 **퇴직연금 제도 운영**을 위해 **지속적**으로 **노력**할 예정

※ 지난 '26.11.12.(목) **제5차 「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」**에서 **논의된 사항**으로, **위원회**에서 **제시**된 **자문의견**을 **반영**하여 개선방안을 **마련**하였음

1 추진 배경

□ 금융감독원은 퇴직연금 사업자와 함께 가입자의 **수익률 제고** 및 사업자 **선택권 확대**를 위해 **'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'**를 **시행**('24.10.31.)

> 참고 **실물이전 의의 및 필요성**
>
> ◆ **(의의)** 실물이전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에 **운용 중인 상품**을 **매도(해지) 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**로 **변경**하는 서비스
>
> ◆ **(필요성) 사업자별 수수료, 상품 및 서비스 등이 달라**, 가입자가 **사업자**를 **변경 하고자 할 때** 기존에는 상품을 **모두 해지**하여 **현금으로만 이전**할 수 있었으나, **실물이전 서비스**를 **도입**하여 **보유 상품 그대로 이전**함으로써 **중도해지 손실** 및 **펀드 환매/재매수 과정**에서의 **기회비용**을 **줄일 수 있음**

□ 다만, 환매중단펀드는 실물이전 대상에 제외*되어 있어 '22년 전쟁으로 **환매가 중단된 러시아 펀드** 등을 보유한 경우 **계좌 전체**의 **실물이전 제한**

* 환매중단펀드 이전시 불완전판매 책임, 민원 동반 이전 등을 우려하여 사업자 간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그간 실물이전 대상에서 배제

○ **환매중단펀드**가 계좌에 **일부라도 포함**되면 **나머지 적립금**도 **이전 불가***

* 소득세법상 연금계좌의 일부 이전은 '인출'로 보아 과세되므로, 계좌 전체에 대해서만 이전

2 환매중단펀드 보유 현황 및 문제점

□ **(현황)** '26.9월말 기준 **환매중단펀드**를 **보유**한 퇴직연금 **가입자**(DC, IRP)는 **5,092명**이며, 해당 가입자의 **전체 적립금**은 **7,835억원 수준**

환매중단펀드 보유 가입자 및 적립금 현황('26.9월말 기준)

(단위 : 명, 억원, %)

구분	보유 가입자 수	가입자의 전체 적립금(A)	적립금內 환매중단펀드 평가액 (B)	환매중단펀드 비중(B/A)
DC	1,256	3,032	47	1.55%
IRP	3,836	4,803	81	1.69%
계	**5,092**	**7,835**	**128**	**1.63%**

□ **(문제점)** 적립금 중 1.63%에 불과한 **환매중단펀드**(128억원)로 인해 **전체 적립금**(7,835억원)이 **실물이전**(사업자변경) **대상**에서 **배제**

○ 따라서, 가입자는 **환매중단펀드의 환매 재개 때**까지 매도 및 계좌 이전이 불가하여, **선택권이 과도하게 제한**

3 개선 방안 및 기대 효과

□ **(개선 내용) 동일한 환매중단펀드**를 **판매**한 퇴직연금 **사업자 간**에는 **해당 환매중단펀드**를 **포함**한 계좌의 **실물이전 방안**을 **마련**

○ 기존 판매이력 등 관련 **기록이 남아** 있어 추후 **불완전판매** 등에 대한 **책임소재 구분**이 가능하며, **동일한 환매중단펀드 판매 사업자 간**에만 이전을 허용하여 **신규 민원 발생 가능성**이 **크지 않다는 점** 등을 고려

※ '환매중단펀드 실물이전 방안 마련'은 '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논의내용 중 하나로 가입자 불편 해소를 위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사업자 간 합의 도출

참고 **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 현황**

◆ **(목적)** 가입자 불편 해소를 위해 실물이전 제도 내 불합리한 사항 개선
◆ **(구성)** 금융감독원, 예탁결제원, 각 금융협회 및 사업자 등 17개 기관
◆ **(경과)** '26.8.24. 킥오프를 시작으로 대면 회의 및 비대면 의견 수렴 지속
◆ **(논의내용)** 환매중단펀드, DC→타사IRP 등 실물이전 범위 확대, 실물이전 취소 사유 입력 의무화 등 프로세스 개선

□ **(추가 개선 사항)** 이번 개선으로 **일정기간(1년) 환매**가 **불가능**한 **개인투자용 국채**('26.9월부터 도입)도 **동일 상품 취급 사업자간 실물이전 가능**

○ **개인투자용 국채**는 만기 보유시에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금리를 복리로 받을 수 있어 **장기 보유**(10년 또는 20년)가 **필요**한 상품이므로 **실물이전**에 따른 **편익 증대**(중도환매시 표면금리 단리 적용)

※ 다만, 개인투자용 국채는 일정기간 이후 중도환매 신청이 가능한 바, 중도환매와 실물이전 신청을 동시에 진행한 경우 환매신청된 국채를 실물이전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차단하는 추가 시스템 구축 필요('27.3월부터 실물이전 허용 예정)

□ **(기대 효과) 환매중단펀드 보유**로 인해 **전체 계좌 이전**이 **불가능**했던 가입자들의 **불편 해소**

○ 아울러, 실물이전 대상 상품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**실물이전 제도**의 **실효성**을 높이고, **사업자간 건전한 경쟁**을 **촉진**할 것으로 기대

참고 **퇴직연금 실물이전 이용실적('24.10월~'26.9월)**

◆ **퇴직연금 실물이전** 서비스 시행('24.10.31.) 이후 '26.9월말까지 **누적 이전** 금액은 **18.4조원**(30.1만여건)으로 **일평균 264억원**(431건)이 이전

○ **권역별**로는 **은행→증권**으로의 **이전**이 **가장 큰 비중**(34.4%) 차지

업권별 실물이전 규모 및 유·출입 현황('24.10.31. ~ '26.9.30.)

(단위 : 억원)

업권간 실물이전 규모

수관 / 이관	은행	증권	보험	합계
은행	53,674	**63,417**	5,606	122,697
증권	13,389	28,742	5,527	47,658
보험	4,337	8,316	1,440	14,093
합계	71,400	100,475	12,573	184,448

업권별 유·출입 규모*

업권	유입	유입 (同업권내제외**)	유출	유출 (同업권내제외**)	순유입
은행	71,400	17,726	122,697	69,023	**△51,297**
증권	100,475	71,733	47,658	18,916	**+52,817**
보험	12,573	11,133	14,093	12,653	**△1,520**
합계	184,448	100,592	184,448	100,592	-

* 동일 업권내 유·출입 포함 (예시 : 은행 유입액 = 타 은행, 증권,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)
** (괄호안) 동일 업권내 유·출입 제외 (예시 : 은행 유입액 = 증권,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)

○ **제도별**로 **DB**는 **'은행', '보험'**으로 유입, **DC, IRP**는 **'증권'**으로 유입되는 경향

제도별 실물이전 유·출입 현황('24.10.31. ~ '26.9.30.)

(단위 : 억원)

업권	DB			DC			IRP		
	유입	유출	순유입	유입	유출	순유입	유입	유출	순유입
은행	31,463	28,742	**+2,721**	22,659	42,337	△19,678	17,278	51,617	△34,339
증권	4,423	13,537	△9,114	34,594	10,182	**+24,412**	61,457	23,939	**+37,518**
보험	11,895	5,502	**+6,393**	505	5,239	△4,734	174	3,353	△3,179
합계	47,781	47,781	-	57,758	57,758	-	78,909	78,909	-

4 향후 계획

□ 금융감독원은 환매중단펀드 실물이전 방안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**시스템 구축** 및 **준비상황**을 **지속 점검**하고 **애로사항**을 **해소**할 계획

○ '퇴직연금 실물이전 개선 TF'를 통해 환매중단펀드 외에도 DC→**타사 IRP** 실물이전 방안 마련 등 **적용 범위 확대**를 **추진**하여 가입자 **편의성**을 지속적으로 **제고**할 예정('27년 상반기 시행 목표)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http://www.fss.or.kr)

붙임1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안내



참고 **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유의사항**

① **(사전조회)**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'이관회사(기존 가입 금융회사)'에서만 신청 가능

② **(실물이전 신청)** 실물이전 신청은 '이관회사' 또는 '수관회사'에서 신청 가능

③ **(상품매도)** 실물이전이 불가능한 상품은 가입자가 직접 해당 상품을 매도하여 현금화한 후 실물이전 가능 상품과 함께 타 사업자로 이전

붙임2 퇴직연금 실물이전 이용실적('24.10월~'26.9월)

【 업권간 실물이전 현황 】

※ **퇴직연금 사업자별(이관회사 기준) 실물이전 서비스에 따른 이전 결과를 합산**
(예시 : A은행 → B은행 : 은행(이관) → 은행(수관) / A은행 → C증권 : 은행(이관) → 증권(수관))

제도 전체 실물이전 규모(단위:억원)

이관 \ 수관	은행	증권	보험	합계
은행	53,674	63,417	5,606	122,697
증권	13,389	28,742	5,527	47,658
보험	4,337	8,316	1,440	14,093
합계	71,400	100,475	12,573	184,448

제도 전체 실물이전 건수(단위:건)

이관 \ 수관	은행	증권	보험	합계
은행	127,136	116,000	1,020	244,156
증권	9,279	38,111	228	47,618
보험	2,016	7,428	161	9,605
합계	138,431	161,539	1,409	301,379

【 업권별 실물이전 유·출입 규모 (억원) 】

※ **동일 업권내 유·출입 포함**
(예시 : 은행 유입액 = 타 은행, 증권,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)

업권	유입	유입 (동업권내제외*)	유출	유출 (동업권내제외*)	순유입
은행	71,400	17,726	122,697	69,023	**△51,297**
증권	100,475	71,733	47,658	18,916	**+52,817**
보험	12,573	11,133	14,093	12,653	**△1,520**
합계	184,448	100,592	184,448	100,592	-

* 동일 업권내 유·출입 제외 (예시 : 은행 유입액 = 증권, 보험회사로부터 유입된 금액의 합산)

【 제도별 실물이전 유·출입 규모 (억원) 】

업권	DB			DC			IRP		
	유입	유출	순유입	유입	유출	순유입	유입	유출	순유입
은행	31,463	28,742	**+2,721**	22,659	42,337	△19,678	17,278	51,617	△34,339
증권	4,423	13,537	△9,114	34,594	10,182	**+24,412**	61,457	23,939	**+37,518**
보험	11,895	5,502	**+6,393**	505	5,239	△4,734	174	3,353	△3,179
합계	47,781	47,781	-	57,758	57,758	-	78,909	78,909	-